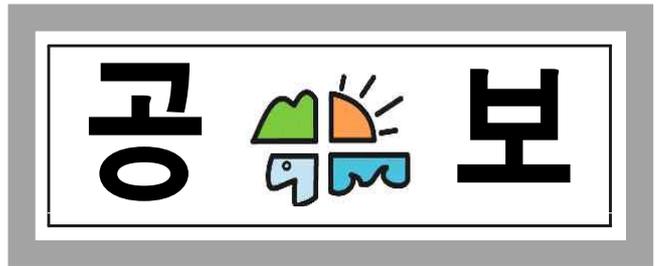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60호 2015년 10월 23일(금)

규 칙

-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공 고

- 폐기(신조)공인 등록사항 공고 8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3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 1339호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”를 “「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조례”를 “「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명의 또는”을 “명의나”로 한다.

별표 3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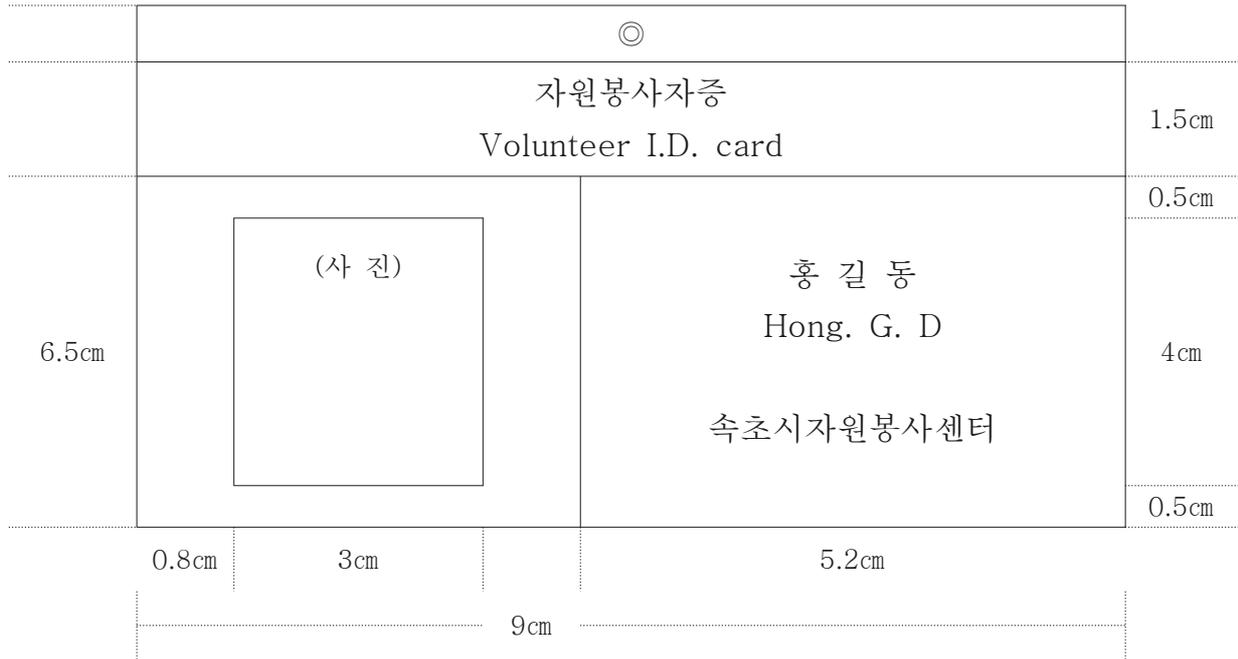
[별표 3]

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구 분	지 급 기 준
자원봉사자 실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봉사시간 : 1일 6시간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기준 : (종료시간-시작시간) + (준비시간 + 평가시간) ● 교통비 : 3,000원 이내 ● 급식비 : 7,000원 이내 ● 활동용품비 : 실 구입가격

자원봉사자증(제18조제4호 관련)

(앞 면)



(뒷 면)



90mm×65mm(특급인쇄용지 54g/m²)

◇ 개정이유

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,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공 고

「속초시수입증지조례」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4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사용에 관한 사항을 「속초시 공인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3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

— 인증기 교체

2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2개 (신조 1개, 폐기 1개)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인증기계기번호
신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(건축행정담당)		훈민정음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15.10.23	F21510195
폐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(건축행정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03.5.26 (2015.10.23.)	F2305528